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제출년월일 : 1997. 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재원중 제2호의 “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기타 재산”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기금의 조성재원중 “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을 삭제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금 또는 기타수입금	제2조 (기금의 조성) - - - - - - - - - - 1. - - - - - 2. 삭 제 2. - - - - -